

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(제10조 관련)

구 분	지정기준	
	기술인력	시설 및 장비
1.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	2명 이상의 기술직과 2명 이상의 기능직을 갖춘 것.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기술직 또는 기능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.	가. 면적이 900㎡ 이상(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0m 이상)인 검사장을 갖춘 것 나. 다음의 장비를 갖춘 것. 다만, 4)와 5)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. 1) 다기능 표준음발생기(31.5Hz 이상 16kHz 이하) 1대 이상 2)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. 다만, 가)와 나)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. 가)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) 1,000Hz 3) 마이크로폰 6대 이상 4) 녹음 및 기록장치(6채널 이상) 1대 이상 5) 주파수분석장비: 50Hz 이상 8,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/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6)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높이 1.5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, 높이 10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2대 이상 7) 평가기준음원(reference sound source) 발생장치 1대 이상
2.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관		가. 배경소음이 20dB(A)이하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향실(반무향실) 또는 잔향실의 검사장을 갖춘 것 1) 무향실(반무향실): KS A ISO 3745 부속서 A 또는 부속서B의 무향실(반무향실) 적합성 기준 2) 잔향실: KS A ISO 3741 부속서A의 잔향실 적합성 기준 나. 다음의 장비를 갖춘 것. 다만, 4)와 5)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. 1) 다기능 표준음발생기(31.5Hz 이상 16kHz 이

		하) 1대 이상 2)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. 다만, 가)와 나)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. 가)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) 1,000Hz 3) 마이크로폰 6대 이상 4) 녹음 및 기록장치(6채널 이상) 1대 이상 5) 주파수분석장비: 50Hz 이상 8,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/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6)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 7) 평가기준음원 발생장치 1대 이상
3.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관		가. 배경소음이 45dB(A) 이하인 검사장을 갖추 것 나. 다음의 장비를 갖추 것. 다만, 3)과 4)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. 1)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. 다만, 가)와 나)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. 가)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) 1,000Hz 2) 마이크로폰 2대 이상 3) 녹음 및 기록장치(2채널 이상) 1대 이상 4) 주파수분석장비: 50Hz 이상 8,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/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5) 인체 귀 모형 측정시스템(Head and Torso System) 1대 이상

비고: 기술인력란의 기술직 및 기능직은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하며,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술직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가. 소음·진동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)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- 2)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,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3)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,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나. 소음·진동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1)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2)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,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3)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,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다. 소음·진동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1) 학사학위를 취득하고, 소음·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2)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, 소음·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
2. 기능직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가.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, 소음·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(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, 소음·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